

의안번호	제 149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**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 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임영은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9년 2월 26일

#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영은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2월 일

발 의 자 : 임영은·박우양·박문희·이상식

이상정·하유정·이의영 의원(7인)

## 1. 제안 이유

- 옥수수 품종과 직무육성품종의 관리 및 승계기관으로 농산사업소를 추가하여 지정함.

## 2. 주요 내용

- 옥수수 품종과 직무육성품종의 관리 및 승계기관에 신규로 농산사업소를 추가함(안 제6조)

## 3. 조례안 : 불 입

## 4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입

## 5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
## 6. 관련부서 협의 : 농업기술원, 농산사업소와 협의완료

## 7. 입법예고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##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) 도지사는 품종보호출원이 인정된 경우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지사 명의로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 하여야 한다. 단, 옥수수 품종의 관리 및 승계는 농산사업소가 한다.

제6조제2호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관리기관 : 농업기술원, 농산사업소
3. 승계기관 : 농업기술원, 농산사업소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6조(품종보호권의    설정등록)</p> <p><u>도지사는 품종보호출원이 인 정된 경우 직무육성품종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도지사 명 의로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(생   략)</p> <p>2. <u>관리기관 : 농업기술원</u></p> <p>3. <u>승계기관 : 농업기술원</u></p>	<p>제6조(품종보호권의    설정등록)</p> <p><u>도지사는 품종보호출원이 인 정된 경우 직무육성품종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이 도지사 명 의로 지체 없이 품종보호권을 설정등록 하여야 한다. 단, 옥 수수 품종의 관리 및 승계는 농산사업소가 한다.</u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관리기관 : 농업기술원, 농 산사업소</u></p> <p>3. <u>승계기관 : 농업기술원, 농 산사업소</u></p>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종자산업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6. 22., 2016. 12. 27.>

1. 종자 및 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교육
2. 지역특화 농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
3.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
4. 종자생산 농가에 대한 채종 관련 기반시설의 지원
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5. 6. 22.>